[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 신청인	1	ㅇ **중소기업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ㅇ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나. 신청제품	4	○ **기술소명자료**	필수제출
		특허 및 실용등록신안 /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5	○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규격서(성능인증 및 K마크인 경우)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 또는 그 밖에 품질소명 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	
	6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해당 시 반드시 제출
	7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필수제출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해당 시 제출
다. 신청	8	신청모델(규격)내역(별지 제1호의 12서식)	필수제출
	9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4서식)	필수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5서식)	필수제출
	11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7서식)	필수제출
	12	기술 · 성능 비교표 (별지 제1호의 9서식)	필수제출
	13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별지 제1호의 10서식, 별지 제1호의 8서식)	해당 시 제출

	14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1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15	신인도심사서(별지 제2호의 5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제출
	16	별표 5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연장기간평가 기업에 한해 제출)	필수제출
	17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3서식)	필수제출
	18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필수제출
	19	기술이력서	필수제출
	20	특허평가보고서	해당 시 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가능)
   - 가의 2호, 3호의 서류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함
   - 나의 4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유효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나의 5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3. 기술·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의 보완·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5. 1차 심사 이후 제출하는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의미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7.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게 부여
8. 위에 명시된 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품임에도 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반려
9. 기술이력서는 '25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고>에 반영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
10. 지정신청 제품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에 해당할 경우 공고에서 정한 기술·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2개 이상일 경우 핵심기술 특허 1개만 해당)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SMART 5 특허 평가보고서'를 제출(단,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실용신안),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신청제품은 해당없음)